#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2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 허종식·정일영·이성만

김형동 · 양기대 · 김민철

박찬대 · 김교흥 · 송영길

윤상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취득세 및 재산세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은 본질적으로 비영리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등을 비롯하여 어려워진 여러 가지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능력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그래서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이루어서 현대국가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1항 • 제2항, 제2 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7조의2제1항제2호).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중 "2020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2년"을 각각 "202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19년"을 "202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22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를 "제19조의2, 제20조제1호,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	감면)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	
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	
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	
<u>20년</u>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u>27년</u>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
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면)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	
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	<u>20</u>
<u>20년</u>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u> 27년</u>
1. · 2.(생 략)	1. · 2.(현행과 같음)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	면) ①
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	

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 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 1. ~ 4. (생략)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경감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저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 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

<u>2027년</u>
1. ~ 4. (현행과 같음)
②
2027년
<u>2021 रा</u>
세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 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 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 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3. (생략)

②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 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 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 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 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 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

<u>2027년</u>
 1 0 (취레기 가 O)
1.~3. (현행과 같음) ②

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
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
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
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회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 세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 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④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 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 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u>2027년</u>
③
00071 4
<u>2027년</u>
· ④
<u>202</u>
<u>7년</u>
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 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22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⑥ (생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 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 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 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 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2027</u>
	년 	
	⑥ (현행과 같음)	
제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1	(생	략)
Ι.	( /Y	47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2, <u>제20 조제1호</u>,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 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
<u>2, 제20</u> 조제1호,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5
<u>항까지,</u>
②•③ (현행과 같음)